|  |  |  |
| --- | --- | --- |
|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종〔2013〕85호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물가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및 발전개혁위: 《국무원판공청의 수출입의 안정적인 성장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약간 의견》（국판발[2013]83호）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등 유관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1.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출경(出境)화물, 운수공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 검역물에 대하여 출입국검사 검역비를 면제한다. (출경인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 비용 불포함, 출국검사 검역관련 상업성 자원위탁검사 및 평가, 출국검역처리, 동물예방접종비용은 기업과 사업단위가 부담)2.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후,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중앙재정예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또한, 종합적인 법정 검사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출입국검사 검역기관의 예산 및 재무관리 제도를 연구 및 조정한다. 3. 각 지역 및 유관부서는 본 통지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수출상품 검사 검역비 면제 정책을 적용해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본 규정의 실시를 지연 또는 거절할 수 없다. 각급 재정, 가격주관부서는 본 통지의 이행 상황을 감독 및 검사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2013년 8월 15일 |  | **关于免收出口商品检验检疫费等****有关问题的通知**财综〔2013〕85号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物价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发展改革委：为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促进进出口稳增长、调结构的若干意见》（国办发〔2013〕83号），现将免收出口商品检验检疫费等有关问题通知如下：　　一、自2013年8月1日起至2013年12月31日，对所有出境货物、运输工具、集装箱及其他法定检验检疫物免收出入境检验检疫费（不包括对出境人员预防接种和体检收取的费用，以及企事业单位承担与出境检验检疫有关的商业性自愿委托检测和鉴定、出境检疫处理、动物免疫接种工作收取的费用）。　　二、免收出口商品检验检疫费后，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履行职能所需经费由中央财政预算予以统筹安排。同时，结合推进法定检验体制改革，研究调整出入境检验检疫机构预算和财务管理制度。　　三、各地区和有关部门要严格执行本通知规定，落实免收出口商品检验检疫费政策，不得以任何理由拖延或者拒绝执行。各级财政、价格主管部门要加强对落实本通知情况的监督检查。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2013年8月15日 |